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63호
개정	2006. 1. 11	조례 제 791호
	2006. 4. 12	조례 제 799호
	2006. 10. 13	조례 제 831호
	2006. 12. 29	조례 제 856호
전문개정	2007. 7. 1	조례 제 884호
	2007. 12. 17	조례 제 910호
전문개정	2008. 12. 29	조례 제 966호(제명개정)
	개정	2009. 6. 26
	2009. 12. 29	조례 제1059호
	2010. 2. 23	조례 제1070호
	2010. 8. 2	조례 제1091호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55호
일부개정	2011. 12. 15	조례 제1192호
일부개정	2012. 3. 2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12. 9. 6	조례 제1243호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
일부개정	2013. 11. 1	조례 제1329호
일부개정	2014. 10. 6	조례 제1386호
일부개정	2015. 5. 18	조례 제1453호
일부개정	2016. 5. 27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2016. 12. 12	조례 제1621호(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
전문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 담당관, 단장, 과장, 읍·면·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2장 시 본청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다. 환경위생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5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행정혁신실,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투자산업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6조(보좌기관) 제1부시장 밑에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제7조(행정혁신실에 두는 과) ① 행정혁신실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혁신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 교육, 직원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주민자치, 자치분권, 국내·외 교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
3.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4. 민원행정, 민원조정,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조직관리, 용인시의회, 인구정책,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
2.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분석, 투자심사에 관한 사무
3. 지출·계약,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자금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제9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 청년지원, 평생교육, 여성회관에 관한 사무
2.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무
3.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
4. 관광정책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

제10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훈, 사회서비스, 생활보장 및 무한돌봄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3.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무
4. 여성정책, 태교도시, 건강가정, 다문화에 관한 사무
5. 아동복지 및 아동보육에 관한 사무

제11조(투자산업국에 두는 과) ① 투자산업국에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② 투자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투자유치, 각종산업유치 및 산업입지에 관한 사무
2.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 고용, 소비자유통에 관한 사무
3. 기업지원, 기업SOS, 공장등록에 관한 사무
4. 농업, 농업생산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무
5. 축산, 가축환경 및 말산업육성에 관한 사무
6. 산림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무

제12조(도시균형발전실에 두는 과) ① 도시균형발전실에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시설계획, 지구단위에 관한 사무
2.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지역균등발전 등에 관한 사무
3. 도시재생, 주거환경, 공공개발에 관한 사무
4. 지적,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제13조(주택국에 두는 과) ① 주택국에 주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공건축과를 둔다.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택에 관한 사무
2. 건축에 관한 사무
3. 경관정책, 공공디자인, 광고물행정에 관한 사무
4. 공공청사, 공공건축, 건축설비에 관한 사무

제14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하천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 및 재난·복구관리 총괄·조정, 민방위에 관한 사무
2. 도로, 교량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하천에 관한 사무
4. 공원·녹지 조성계획 수립·추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사무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센터에 두는 과) ① 센터에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를 둔다.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
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6. 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
7. 농작물 병충해 예방·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10.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
11.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
12.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1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관한 사무
14.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15.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16. 비료·농약·토양·수질·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17. 주요 농산물 가공기술 및 산업화 연구
18.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19.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무

제18조(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 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보건소에 두는 과)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4장 사업소

제22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2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환경위생사업소에는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위생과를 둔다.

② 교통관리사업소에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③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를 둔다.

④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재생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를 둔다.

⑤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을 둔다.

제2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1. 환경위생사업소

가. 환경보전 및 수질에 관한 사무

나.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

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공사에 관한 사무

라.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

마. 대기에 관한 사무

- 바.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무
- 사.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시설물관리, 재활용에 관한 사무
- 아. 위생관리, 위생지도 및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무
- 2. 교통관리사업소
  - 가.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무
  - 나. 교통개선, 교통정보, 주차관리에 관한 사무
  - 다. 대중교통, 운수 및 자동차관리업에 관한 사무
  - 라. 경량전철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 마. 차량등록, 차량검사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무
- 3. 상수도사업소
  -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 나. 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 다.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 라.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무
  - 마.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
  - 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4. 하수도사업소
  - 가.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나.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 다. 하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 라. 하수재생 및 물의 재이용 사업에 관한 사무
  - 마. 분뇨·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5. 도서관사업소
  - 가. 도서관 정책, 독서진흥에 관한 사무
  - 나.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
  - 다.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
  - 라.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
- 6. 동물보호센터

- 가. 동물 관련 각종 사업 및 축제추진 등에 관한 사무
- 나.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
- 다. 동물구조에 관한 사무

##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구청장) 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처인구에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공원환경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를 두고, 기흥구와 수지구에 자치행정과, 생활민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를 둔다.

### 제2절 읍·면·동

제29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직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리·반장 조직운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3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58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54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

제3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

②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위생사업소, 동물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

③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의 위원장관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⑩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46조, 제47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⑪ 「용인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⑫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⑬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⑮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⑯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⑰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⑱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 ⑲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⑳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㉑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㉒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㉓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㉔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㉔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 ㉕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52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㉖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㉗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3항제1호, 제6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제61조제3항제1호, 제68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 ㉙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제3항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 ㉚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㉛ 「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㉜ 「용인시 문화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㉝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㉞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㉟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㉟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㊱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㊲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㊳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㊴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㊵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㊶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㊷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중 “4급 각 실·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한다.

㊸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㊹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㊺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㊻ 「용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④⑨ 「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⑤⑩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⑤⑪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⑤⑫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제4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⑤⑬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 ⑤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4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⑤⑮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⑤⑯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⑤⑰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⑤⑱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국장”을 “실장, 국장, 소장”으로 한다.
- ⑤⑲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⑥0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⑥1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⑥2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⑥3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3, 5의 차장란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⑥4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⑥5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⑥6 「용인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⑥7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⑥8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⑥9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⑦0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㊁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㊂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⑧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장”으로 한다.

[별표 1]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 인 시 청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용 인 시 처 인 구 보 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기 흥 구 보 건 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용 인 시 수 지 구 보 건 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 환 경 위 생 사 업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 인 시 교 통 관 리 사 업 소	교 통 정 책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대 중 교 통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도 시 철 도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차 량 등 록 과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	
용 인 시 수 도 상 사 업 소	수 도 행 정 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수 도 시 설 과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정 수 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619번길 77	
용 인 시 하 수 도 상 사 업 소	하 수 재 생 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 수 시 설 과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하 수 운 영 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	
용 인 시 도 서 관 사 업 소	도 서 관 정 책 과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동 부 도 서 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7	
	서 부 도 서 관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	
용 동 물 보 호 센 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용 처 인 구 시 청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용 기 흥 구 시 청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용 수 지 구 시 청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처 인 구	포곡읍	읍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일원
	모현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독점로 31-6	모현면 일원
	남사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일원
	이동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이동면 일원
	원삼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일원
	백암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면 일원
	양지면	면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면 일원
	금령동	동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8번길 7	김량장동, 남동 일원
	명지동	동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	역북동, 삼가동 일원
	백옥대동	동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5	유방동, 고림동 일원
기 흥 구	중부대동	동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일원
	신갈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신갈동 일원
	하갈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하갈동, 영덕동 일원
	구갈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3	구갈동 일원
	상갈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일원
	공세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43번길 12-14	공세동, 고매동 일원
	농서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94	농서동, 서천동 일원
	언남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77번길 17	언남동, 청덕동 일원
	마북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구교동로118번길 16	마북동 일원
	동백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4	동백동, 중동 일원
	상하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3	상하동 일원
	보정동	동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0	보정동 일원

기 관 명		소 재 지	관 할 구 역
수 지 구	풍 덕 천 1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3	풍덕천동 일원
	풍 덕 천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	풍덕천동 일원
	신 봉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15	신봉동 일원
	죽 전 1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5번길 50	죽전동 일원
	죽 전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23	죽전동 일원
	동 천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83번길 40	동천동, 고기동 일원
	상 현 1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71	상현동 일원
	상 현 2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48	상현동 일원
	성 복 동 주 민 센 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00	성복동 일원

[별표 2]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2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도시농업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7	기흥구·수지구 관할 동지역
중 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74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북 부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모현면
남 사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이 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이동면
원 삼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춘로 7-1	원삼면
백 암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로 17-5	백암면

[별표 3]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19조제3항 관련)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치보건구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치인구 일원
기흥보건구소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기흥구 일원
수지보건구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 일원
포곡읍보건지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58	포곡읍 일원
모현면보건지소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독점로 31-6	모현면 일원
남사면보건지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 일원
이동면보건지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경기동로 673	이동면 일원
원삼면보건지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64	원삼면 일원
백암면보건지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189	백암면 일원
양지면보건지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105번길 5	양지면 일원
원삼면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421번길 8-1	원삼리, 진목리, 전궁리 일원
남사면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남산로6번길 2	아곡리, 완장리, 창리 일원
원삼면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34	죽능리, 목신리 일원
양지면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571번길 25	대대리, 정수리, 주북리 일원
백암면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797번길 48	백봉리, 고안리 일원
백암면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599-3	장평리, 용천리, 옥산리, 석천리 일원
백암면보건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로24번길 25	가창리 일원
기흥구보건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3-1	고매1, 2, 4, 8동 농서1동
기흥구보건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90번길 64	고매3, 5, 6, 7동 공세동 일원
수지구보건진료소	용인시 수지구 호수로 11-3	고기동 일원

[별표 4]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6조제2항 관련)

구 명	관 할 구 역	비 고
처 인 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기 흥 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영덕동, 언남동, 마북동, 청덕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수 지 구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별표 5]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8% 이상	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6]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5%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8% 이내	6.4% 이상	0.1% 이내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10% 이내	35% 이상	35% 이상	10% 이내	10% 이내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2,584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2,536	-					
2급	2	2	-	-	-	-	-
3·4급	3	2	1	-	-	-	-
4급	17	6	-	3	5	3	-
5급	128	42	4	7	18	26	31
6급 이하 계	2,386	-					
별정직 계	2	-	-	-	-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이하 계	2	-					
전문경력관 계	2	-					
연구직 계	6	-					
연구관	-	-	-	-	-	-	-
연구사	6	-					
지도직 계	37	-					
지도관	4	-	-	4	-	-	-
지도사	33	-					